

「2021/22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인도네시아 신수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및 숲도시 개발 계획

과 업 지 시 서

2021. 1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목 차

I. 과업지시서.....	1
1. 개요.....	1
2. 과업기간.....	6
3. 과업내용.....	6
4. 과업의 일반원칙.....	9
5. 과업수행 방법.....	12
6. 과업성과품 제출.....	13
7. 보안대책.....	16

## 1. 개 요

□ 과업명 : 「2021/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인도네시아 신수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및 숲도시 개발계획

□ 과업배경

○ 수도이전 개관

- 자카르타와 자바섬의 인구집중 및 경제력 편중이 심화되고 심각한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 물 문제, 지반침하 등 도시문제 대두
  - \* 자카르타 수도권에 3천만명 밀집, 전체인구의 57%가 자바섬 거주
- 정부기관이 자카르타와 보고르에 분산되어 있어 공공행정 효율성이 저하
- 이에, 인니정부는 자바섬 밖 동부 칼리만탄섬(Kutai Kartanegara군, 北 Penajam Paser군)에 전략적 수도이전을 시행하여 불평등, 불균형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인니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를 건설코자 계획하고 있음



○ 제약요인

- 숲도시(Forest city)는 인니 수도이전의 핵심개념으로, 이를 중심으로 신수도를 스마트, 녹색 성장, 지속가능성, 심미적인 도시로 건립코자 하나,

- 현재까지 구체적 정의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2020년에 와서야 문헌 조사를 통해 숲도시 개념 파악, 원칙이나 기준, 지표에 대한 개괄적 모색, 숲도시 실행을 위한 일부 기술 이슈 및 수행조직 관련 이슈만이 도출되어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
- 협력국 정책 부합성
  - 숲도시 달성을 위한 일부 정성적 지표가 식별되었을 뿐, 신수도 개발의 기본적인 지침이 될 정량적 KPI 도출시 숲도시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됨
  - 신수도 현 부지의 42.3%는 산림이며, 신수도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숲도시 컨셉을 통해 신수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녹지공간도 75%에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구체적 개념, 달성지표, 액션플랜 도출시 숲도시 정책에 부합
- 국내 정책 부합성
  - 산림청은 지난 1987년 6월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
    -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2013년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산림보전지의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2011년 ‘한-인니 산림센터’ 개소 이후 산림청은 우리나라의 해외산림자원 확보와 인도네시아의 산림 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고, 양국 정부 및 민간 분야의 녹색 파트너십 노력 지속
    - \* 한-인니 산림센터’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도이전 계획에 맞춰 산림센터를 신수도로 이전하고, 가칭 ‘한-아세안 산림센터’로 개편, 아세안 지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
  - 기획재정부가 세계은행에 2011년부터 지속 지원해오고 있는 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에 축적된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과 우수솔루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인니에 전수함으로써 우리 다자간원조의 활용 성과 극대화 가능
- 사업 필요성
  - 본 연구는 신수도 마스터플랜 및 전략적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의 세부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연구임. SEA는 신수도 마스터플랜과 함께 신수도 공간계획에서 개발대상과 비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개발대상지는 도시로 조성되며 비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으

로서 산림, 고보호가치(HCV, High Conservation Value) 구역, 맹그로브 및 재해위험지로 구성될 것임

- 신수도 숲도시 기준과 원칙 달성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업임. 단순히 신수도 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야생 동식물 보호, 인간과 자연의 조화, 신수도의 저탄소 발전, 수자원 활용 및 포용적 발전 등 다양한 측면을 커버하는 지표체계 수립이 필요함

#### □ 과업목적

- 인니 신수도 마스터플랜, 전략적환경평가(SEA)와 연계한 숲도시 개발계획 수립
  - 숲도시 구상 이행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도출
  - 한국 녹색성장 경험/솔루션 기반 신수도 지역의 숲도시 장·단기 실행계획(안)
  - 신수도 지역 자연 환경 보전계획(안)
- 기대성과
  - KPI 발굴 및 추가 연구를 통한 신수도 지역 숲도시 이행 원칙 마련 및 구상
  - 신수도 개발 과정에서 자연 파괴를 최소화 및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보호
  - 신수도 지역 내 인간-자연 간 조화가 이루어진 녹색 인프라 구현
-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인니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과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반영하여야 함
- ※ 과업수행자는 기획재정부의 2020/2021 인니 EIPP(경제혁신파트너쉽프로그램), 인니 K-City Network를 통해 수행될 신수도 건설관련 타 정책자문과 기타 인니정부의 MP, 도시설계 내용을 반영하고 연계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 과업수행자는 인니 정부 및 현지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여야 하고, 필요시 사안별로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e.g. 현지 시장조사 등은 현지 리서치 및 마케팅 수행경험이 있는 글로벌 서비스(자문) 회사에서 시행)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

### 3. 과업내용

[공동연구] 협력 대상국의 주제에 대해 한국 경험을 토대로 숲도시 개념정립 및 실행방안 모색

□ 숲도시 개념 및 정량·정성적 핵심성과지표(KPI) 정립

○ 인도네시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 인도네시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요인 및 기준 등의 분석 (밀도, 대중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생태적 환경, 정보통신, 주거, 식음료 등)

- 신수도 예정지의 환경적 여건과 적용기준 및 신수도 숲도시 조성방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신수도의 숲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적 기준 제안 및 그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방향 제시 (저탄소 도시조성, 포용적 도시환경 등 반영)

- 맹그로브 등 자원보전, 지진 등 재해위험에 적절히 대응하는 전략적 숲도시 정책 제시 (야생 동식물 보호, 인간과 자연의 조화 등 최근 경향 포함)

- 지속가능한 숲도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친환경적 스마트시티 솔루션 분석 및 적용방안 제안

○ 숲도시 개념 정립

- 한국 등 글로벌 사례 조사 및 지속가능한 환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숲도시 개념의 정립

- 신수도 이전 부지 및 인접 지역의 현재 자연 환경 여건 파악 및 분석

- 숲도시의 입지, 인프라 연결, 친환경적 밀도, 생태적 조성 및 관리 등의 기본구상 포함

- 신수도 마스터 플랜 및 전략적환경평가(SEA) 상 숲도시 관련 구상 재검토, 연계성 제고 등 개선안 제안

- 정량·정성적 핵심성과지표(KPI) 정립
  - 지표 정립의 필요성, 지표설정 및 분류 원칙, 지표관리 및 개선 방향 등 제안
  - 지속가능한 환경기준, 연관 계획/법제, 숲도시 개념 등에 부합하는 인도네시아의 지표 연구 및 정립

□ 신수도 마스터플랜, 전략적환경평가(SEA)와 숲도시 개념, KPI 연계

- 상위 및 연관 계획, 규제, 법률 등의 분석
  - 인니 신수도 마스터플랜 및 전략적환경평가(SEA)의 분석
  - 기타 신수도 조성 관련 상위 및 연관 계획, 규제, 법률 등의 분석
- 숲도시 개념 및 KPI와 기존 계획 연계 분석
  - 신수도 마스터 플랜 및 전략적환경평가(SEA) 상 토지이용계획 내 숲도시 관련 구상 재검토, 적용 및 연계방안

□ 한국 녹색성장 경험/노하우 연구 및 숲도시 이행 장·단기 로드맵 마련

- 한국 기준 및 적용 사례 분석
  - 환경적 지속가능성 요인분석 및 기준 (밀도, 대중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생태적 환경, 정보통신, 주거, 식음료 등)
  - 기획, 개발, 관리, 재생 등 도시조성 전 과정에서 숲도시 조성 등 친환경 사업 관리 방향 및 사례
  - 주요 도시개발사업에서 환경적 요인과 기준의 구체적 적용 및 사후 분석/개선 사례
  - 신도시의 경관보전·형성·관리를 위한 경관 형성 및 관리 계획기준 소개 (사례 포함)
  - 신도시 조성시 환경부담 저감을 위한 환경계획(Green-Plan) 소개 (사례 포함)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소개 (사례 포함, 생태적/유기적 요인 등 최근 경향 포함)
  -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그 적용 현황 (사례 포함)

- 한국 관련정책 소개 및 인도네시아 숲도시 이행 장/단기 로드맵 제안
  -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적 기준 내에서 산림정책의 역할과 유기적 관계 소개
  -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정책의 소개 및 사후 분석/개선 사례
  - 산업성장 과정에서 산림의 조성, 보존, 복원의 노력과 그 시사점 소개 (개발제한구역 포함)
  - 한국의 도시에 구현되고 있는 도시숲 등 산림정책의 체계적 지위와 그 적용 사례
  - 맹그로브 등 자원보전을 강화하고, 지진 등 재해위험을 저감하는 전략적 숲 정책 제시
  - 4차 산업혁명, ICT 등을 활용한 숲도시 관련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방향 제시
  - 숲도시 이행 장/단기 로드맵 제안: 1단계 ~2024년, 2단계 2024~2045년

### [역량강화]

- 신수도 숲도시 조성 관련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 추진
  - 한국의 정부기관(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연구기관(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세종시 등의 신도시를 방문하여 한국의 숲도시 구현 정책 및 실무경험을 공유
  - 인니측 요청에 따라, 중앙 및 지방공무원 대상 KPI 도출 방법론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 \*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은 주제와 연계하여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변경 구성할 수 있음
    - \* COVID-19로 정책실무자 연수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추진방안 마련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 4. 과업의 일반원칙

##### □ 자료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 과업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 법률, 기술,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

#####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성과물 작성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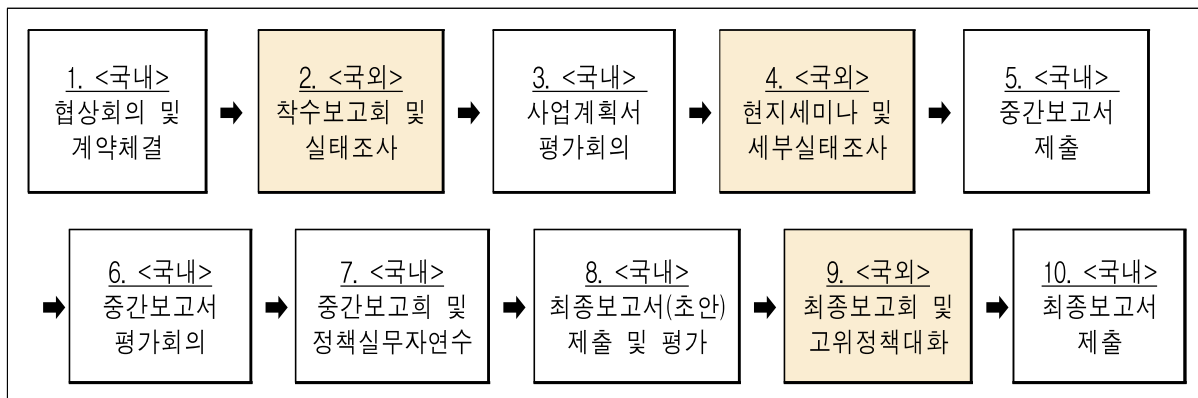
##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국외출장 및 정책실무자연수 개최 시 출장자 및 연수 참가자가 여행자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보상 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국외 체류 시 안전매뉴얼’에 따라 안전지침, 위기상황대처 및 여행경보제도 안내를 통한 안전관리 자체 교육을 실시함

-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과업수행사의 연구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발주자와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 후 발간하여야 함
- 과업내용(주요 결과물)은 발주자 및 협력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모든 현장 활동 및 우리 공사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전 과업범위에 대해 검토 및 감독을 이행해야 함

## 5. 과업수행 방법

### <2021/22 EIPP 사업 단계>



※ 구체적인 일정은 실제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추진방안 마련

#### □ 일반사항

-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통합 실시),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통합 실시),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통합 실시), 최종보고회 및 고위 정책대화(통합 실시), 국내공유세미나\* 등을 수행
- \* 국내공유세미나는 사업종료 이후 KIND에서 주관하며, 요청시 사업수행 기관(연구진)은 동 세미나에서 연구결과물 발표를 수행

- 필요시 각 주제별로 주제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여 현지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공동연구로 추진
- 기타 모든 사업의 기획·집행·결과 공유 활동 등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기획재정부, 2019.10.2.)」에 따라 실시

□ 현지 실태조사

- 사업대상국의 인문, 자연, 경제,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월간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률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

## 6. 과업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착수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국문, 영문 보고PPT 준비)
  - \* COVID-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
- 제출방식 : 공문 및 이메일(착수계,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 금차최종보고서

- 내용: 진행된 사업의 주제별 주요 진행경과를 포함, 협력국 현황 분석 작성
- 사업진행 경과보고서(국문 5페이지 이상), 주제별 보고서(국문 10페이지) 각 1부
- 제출방식 : 이메일

□ 사업 단계별 활동계획보고서(국·영문)

- 내용 : 현지조사, 보고회(착수·중간·최종), 정책실무자연수 활동 계획 등
- 기한 : 활동 착수일자 2주 전
- 제출방식 : 이메일

□ 사업 단계별 활동결과보고서(국문)

- 내용 : 현지조사, 보고회(착수·중간·최종), 정책실무자연수 활동 결과 등
- 기한 : 활동 종료일자 2주 내
- 제출방식 : 이메일

□ 사업계획서(국문)

- 내용 : 확정된 과업 목표 및 범위, 사업 추진계획 및 보고계획
- 기한 :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후 2주 내
- 제출방식 : 공문 및 이메일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및 세부실래조사 및 연구시 확인한 주요 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기한 : 현지 중간보고서 평가회 개최 2주전
- 제출방식 : 공문 및 이메일
- 중간보고회는 현지 수도이전 관계공무원 참석하 정책실무자연수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수행(국문, 영문보고 PPT 준비)
- \* COVID-19로 정책실무자 초청연수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

- 계약 해당년도의 연구 진행 내용 등에 대해 금차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식 : 공문 및 이메일(중간보고서)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200페이지 이하, 국문·영문)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국·영문 각 30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필요시 인도네시아의 현행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는 요약본 별도작성 제출(국·영문·인니어 각 10부)
- 기한 : 최종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서 평가회 개최 3주 전 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제출
- 최종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국문, 영문 보고PPT 준비)
  - \* COVID-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
- 제출방식: 공문 및 이메일, 인쇄본(최종보고서), USB 1세트(성과품 관련 모든 자료)

#### □ 사업종료보고서(국문)

- 내용 : 사업개요, 수행과정, 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
- 기한 : 계약완료 후 영업일 20일 이내
- 제출방식: 공문 및 이메일

#### □ 수정보고서

-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기재부 및 KIND내부위원 외 분야별 자문평가위원의 자문(또는 평가) 과정을 별도로 거치며 자문(또는 평가)의견에 따른 수정보고서 제출
- 제출방식: 이메일

※ 착수보고서, 사업계획서 외 보고서 제출기한, 보고서/USB 제출부수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발주처는 사업활동 점검을 위해 별도 보고서 제출 요청 가능

※ 점검회의 실시(최소 3회) : 1차 점검회의(성과품 : 사업계획서), 2차 점검회의(성과품 : 중간보고서 및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3차 점검회의(성과품 : 최종보고서 및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등

##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



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